

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

제 정 : 1991. 3. 2.

최근개정 : 2026. 3. 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대학원 학칙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6. 3. 5.]

제2조(자격시험의 종류) 삭제

[전문개정 2026. 3. 5.]

제3조(시험시기) ①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에 실시한다.(2023.11.16. 개정)

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에 실시한다.(2023.11.16. 개정)

제4조(자격시험 출제) ① 외국어 시험의 출제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.

② 제2외국어시험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외국어 학과 소속 교수가 출제한다. 다만, 해당 외국어 학과 소속 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출제한다.

③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, 각 학과 주임교수가 출제하며, 시험문항 및 관련 자료는 대학원 교학과에서 관리한다.

④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 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.

[전문개정 2026. 3. 5.]

제5조(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)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.

[제목개정 2026. 3. 5.]

제6조(응시절차 및 응시료)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, 별표 1에 따른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6. 3. 5.]

제7조(외국어시험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

1.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
2. 목원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(70점이상)에 합격한 자
3. TOEFL: 550점 이상
4. CBT: 210점 이상
5. iBT: 80점 이상
6. IELTS: 5.5 이상
7. TEPS: 550점 이상

[전문개정 2026. 3. 5.]

제7조의2(종합시험의 면제) 종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[2019.10.18.개정]

1.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.0(4.5만점 기준) 이상인 석·박사 과정생
2.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(등재후보지 포함) 또는 SCI(SSCI)급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·박사 과정생[2019.01.05.개정]

[제목개정 2026. 3. 5.]

제8조(재응시) 삭제[2019.10.18.개정]

[제목개정 2026. 3. 5.]

제2장 외국어 시험 <개정 2026. 3. 5.>

제9조(시험 과목)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. 다만, 외국인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

1. 영어
2. 제2외국어(독일어, 프랑스어, 중국어, 일본어, 한국어) 중 1개

[전문개정 2026. 3. 5.]

제10조(합격 인정) 외국어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다만, 외국인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<개정 2026. 3. 5.>

[제목개정 2026. 3. 5.]

제3장 종합시험 <개정 2026. 3. 5.>

제11조(응시 자격) ①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외국어 시험 합격 또는 목원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
2. 3학기 이상 정규등록
3. 1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

②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외국어 시험 합격
2. 4학기 이상 정규등록
3. 54학점 이상(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 포함)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

[전문개정 2026. 3. 5.]

제12조(합격기준) 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[전문개정 2026. 3. 5.]

부칙

1.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10.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11. 본 개정 내규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내규 제22604호,2022.05.25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개정 내규는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(편입생, 재입학생 포함)부터 적용한다.(2023.11.16. 개정)

부칙(내규 제26604호,2026.3.5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자격시험 응시료, 출제 및 채점 수당 <신설 2026. 3. 5.>

자격시험 응시료, 출제 및 채점 수당 (제4조제4항 및 제6조 관련)

1. 자격시험 응시료

구분	응시료	비고
외국어 시험	10,000원	
종합시험	10,000원	과목별로 납부

2. 출제 및 채점 수당

구분	수당	비고
외국어 시험	1명당 5,000원	신청자가 1명인 경우 전액지급
종합시험	응시과목당 5,000원	

(별지 2호) (2023.11.16. 개정)

종합시험 자격시험 신청서

◆ 시행일자 : 20 . . . () : ~ (과목당 1시간)

학과 / 과정	/	학번 / 학기	/
연락처		성명	

순번	신청과목	출제교수	비고
1			
2			
3			
4			
5			

※신청과목은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종합시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목적	개인정보 항목	규정 및 보존기간
종합시험업무처리	학과, 과정, 학번, 학기 연락처, 성명 등	시험및성적관리 : 10년 “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” 제3장 및 제5장(석사, 박사 종합시험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예 아니오

위와 같이 종합시험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주임교수 : (인)

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